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등록) 을 위한 실천 규정	문서번호: LAS-A0-06-07 개정일자: 2017. 10. 30 개정번호: 1	
		페이지	1 / 4

1. 목적

이 규정은 롯데알미늄(이하 '회사'라 한다)의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 2.1 "**파트너사**"라 함은 회사의 제조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2.2 "**파트너사** 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파트너사** 운영안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2.3 "**파트너사** 운용"이라 함은 **파트너사**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파트너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파트너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3.1 **파트너사** 선정/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파트너사** 등록유효기간 만료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3.2 **파트너사** 신규등록은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갖는다. 단, 적정 소요회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3.3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 3.4 **파트너사** 선정(갱신등록 포함)또는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 3.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등록업체와 신규등록업체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4.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파트너사** 선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LOTTE 롯데알미늄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등록) 을 위한 실천 규정	문서번호: LAS-A0-06-07 개정일자: 2017. 10. 30 개정번호: 1
		페이지 2 / 4

5.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5.1 **파트너사**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호의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다.

5.1.1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및 인증 보유여부

5.1.2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5.1.3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5.1.4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등

5.2 회사는 **파트너사** 선정시 다음 각호의 사유는 사유로 **파트너사**를 선정하지 주의하여야한다.

5.2.1 퇴직 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

5.2.2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5.2.3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파트너사** 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5.3 필요시 **파트너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5.4 상시 **파트너사** 등록을 위해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가 직접 제안을 할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5.5 회사의 귀책사유로 **파트너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5.6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6.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부여

파트너사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LOTTE 롯데알미늄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등록) 을 위한 실천 규정	문서번호: LAS-A0-06-07 개정일자: 2017. 10. 30 개정번호: 1	
		페이지	3 / 4

- 7.1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7.1.1 **파트너사** 등록 평가시, 기준 점수 미달인 업체
 - 7.1.2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7.1.3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7.1.4 관련 법규(하도급법, 중소기업법 등)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7.1.5 회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7.1.6 안전, 환경,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 7.1.7 중대 하자발생 또는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한 경우
 - 7.1.8 회사의 임직원에게 뇌물 제공, 협박등을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문란케 한 경우
 - 7.1.9 등록 후 3년간 신규계약 실적이 없는 등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 7.2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당한 등록 취소 사유로 인해 **파트너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7.2.1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7.2.2 경쟁사업자의 **파트너사**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7.2.3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 7.2.4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7.3 **파트너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개별 통지한다.
- 7.4 **파트너사** 선정에 제외된 경우, 해당사업자가 등록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LOTTE 롯데알미늄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등록) 을 위한 실천 규정	문서번호: LAS-A0-06-07 개정일자: 2017. 10. 30 개정번호: 1	
		페이지	4 / 4

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8. 제재

회사는 임직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 및 상벌규정 등 회사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여야 한다.

9. 위임

회사는 동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0)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1) 조직개편

11. 사내 다른 구매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은 본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